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22p 번호 : 19	해설	<p>제9조의2(준수사항)</p> <p>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처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처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처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처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의2(준수사항)</p> <p>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처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처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처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처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수정 사유	법령 개정
문제편 56p 번호 : 18	문제-문항	<p>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처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전자장치 부처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부처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처하여야 한다. 	<p>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p>
		수정 사유	법령 개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60p 번호 : 04	문제-문항	<p>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원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기가 <u>(가)</u>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u>(나)</u>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u>(다)</u>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div>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u>(가)</u></th> <th><u>(나)</u></th> <th><u>(다)</u></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2</td> <td>2</td> <td>6</td> </tr> <tr> <td>②</td> <td>3</td> <td>2</td> <td>3</td> </tr> <tr> <td>③</td> <td>3</td> <td>2</td> <td>6</td> </tr> <tr> <td>④</td> <td>3</td> <td>3</td> <td>3</td> </tr> </tbody> </table>		<u>(가)</u>	<u>(나)</u>	<u>(다)</u>	①	2	2	6	②	3	2	3	③	3	2	6	④	3	3	3	<p>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변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원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기가 <u>(가)</u>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u>(나)</u>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u>(다)</u>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사람 </div> <p>(가) (나) (다) ① 2 2 6 ② 2 3 3 ③ 3 2 6 ④ 3 3 3</p>
	<u>(가)</u>	<u>(나)</u>	<u>(다)</u>																				
①	2	2	6																				
②	3	2	3																				
③	3	2	6																				
④	3	3	3																				
		수정 사유	법령 개정																				
해설편 63p 번호 : 04	해설	<p>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93조(중간처우)</p> <p>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원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기가 <u>3년</u>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u>2회</u>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u>3개월</u>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div>	<p>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93조(중간처우)</p> <p>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원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기가 <u>2년</u>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u>3회</u>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사람 </div>																				
		수정 사유	법령 개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83p 번호 : 20	문제-본문	<p>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이고, 형기는 2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인 자</p> <p>㉡ 개방처우급 수행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2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p> <p>㉢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이고, 형기는 4년이며, 범죄횟수는 2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p> <p>㉣ 개방처우급 수행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인 자</p> </div> <p>① ㉠, ㉡ ② ㉡, ㉣ ③ ㉠, ㉡, ㉣ ④ ㉡, ㉣, ㉤</p>	<p>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변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이고, 형기는 1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인 자</p> <p>㉡ 개방처우급 수행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p> <p>㉢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이고, 형기는 4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p> <p>㉣ 개방처우급 수행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9개월인 자</p> </div> <p>① ㉠, ㉡ ② ㉡, ㉣ ③ ㉠, ㉡, ㉣ ④ ㉡, ㉣, ㉤</p>
		수정 사유	법령 개정
해설편 83p 번호 : 20	해설	<p>㉠ 형기가 2년이므로 중간처우 대상자가 아니다. ㉡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이어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93조(중간처우)</p> <p>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3. <u>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u> <p>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행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12.10.]</p> </div>	<p>㉠ 형기가 1년이므로 중간처우 대상자가 아니다. ㉡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93조(중간처우)</p> <p>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사람 <p>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행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 2.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 교정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개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div>
		수정 사유	법령 개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91p 번호 : 19	문제-문항	<p>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 <p>①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②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③ 최근 1년 이내 징벌이 없는 사람 ④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p>	<p>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 <p><변형></p> <p>①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②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③ 최근 1년 이내 징벌이 없는 사람 ④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사람</p>
		수정 사유	법령 개정
해설편 93p 번호 : 19	해설	<p>제93조(중간처우)</p> <p>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p> <p>1.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p>	<p>제93조(중간처우)</p> <p>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p> <p>1.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사람</p>
		수정 사유	법령 개정
문제편 104p 번호 : 06	문제-본문	<p>06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p> <p>ㄱ. 수형자의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완화경비처우급의 경우 월 5회 이내로 제한된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ㄷ.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ㄹ. 목욕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ㅁ.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ㅂ. 수형자의 신입 수용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ㅅ. 면회자가 가져온 음식물은 영치할 수 있다. ㅇ.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다.</p> <p>① ㄱ, ㅂ, ㅅ ② ㄴ, ㄹ, ㅇ ③ ㄱ, ㄹ, ㅅ, ㅇ ④ ㄷ, ㅁ, ㅂ, ㅅ</p>	<p>06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변형></p> <p>ㄱ. 수형자의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완화경비처우급의 경우 월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ㄷ.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ㄹ. 목욕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ㅁ.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ㅂ. 수형자의 신입 수용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ㅅ. 면회자가 가져온 음식물은 영치할 수 있다. ㅇ.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다.</p> <p>① ㄱ, ㅂ, ㅅ ② ㄴ, ㄹ, ㅇ ③ ㄱ, ㄹ, ㅅ, ㅇ ④ ㄷ, ㅁ, ㅂ, ㅅ</p>
		수정 사유	법령 개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105p 번호 : 09	문제-본문	<p>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사전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항목의 개수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 석방 후의 생활계획 • 범죄 후의 정황 • 책임감 및 협동심 • 접견 및 편지의 수신·발신 내역 </div> <p>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p>	<p>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사전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항목의 개수는? <변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 석방 후의 생활계획 • 범죄 후의 정황 • 책임감 및 협동심 •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p>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p>
		수정 사유	법령 개정
해설편 105p 번호 : 06	해설	<p>정답의 이유</p> <p>ㄱ.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환경범죄수습수형자의 경우 월 5회가 아니라 월 3회 이내로 제한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2호).</p> <p>ㄴ. 수형자의 신입 수용 시 권리와 권리구제, 의무, 일과 등에 대한 고지규정은 있지만, <u>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u></p> <p>ㄷ. <u>음식물은 영치의 대상이 아니다.</u></p>	<p>월 10회</p>
		수정 사유	법령 개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106p 번호 : 09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 및 협동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제1호 다목) 접견 및 편지의 수신·발신 내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제3호 다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0.8.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직업장려금 및 직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동기·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동거할 친족·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직장명·나이·직업·주소·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편지의 수신·발신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 및 협동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제1호 다목)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제3호 다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직업장려금 및 직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동기·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동거할 친족·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직장명·나이·직업·주소·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div>
		수정 사유	법령 개정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